

Jisung Horizon Newsletter

June 2010 Vol.3. No.21

01 열려라 중국

- 중국 정부 외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표 (김옥림 중국변호사)

04 Vietnam LIVE!

- 골프코스 건설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 검토 (김주현 변호사 • JS Horizon Vietnam Hanoi 지사장)

07 생생 러시아

- 우크라이나 회사 관련 법제 (채희석변호사)

09 주목! 이 판례

-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사용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 90760 전원합의체 판결)

18 최신법령

- 새로운 상행위 유형의 도입 등
- 기업집단의 범위로부터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제외 등
- 근로자의 체당금청구에 있어서의 지원절차의 마련 등
-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 등

21 지평지성 소식

- 법무법인 지평지성 사무소 전화/팩스 국번 변경 안내

22 업무동향

- 포스코특수강을 대리하여 베트남 압연공장 신설 프로젝트의 투자허가 및 법률자문 업무 수행
- 지평지성, 지평지성, IBKS SPAC 설립 관련 자문 제공
- '제2회 지평지성 법무아카데미' 진행 중

25 지평지성 단신

- 이호원 대표변호사, 대법원 주최 '사법제도개선 공청회' 사회자로 참석
- 임성택 변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최 '무선 인터넷 활성화와 심의 전망' 세미나 발제 / 임성택 변호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주최 '변호사와 공익인권' 강연
- 법무법인 지평지성, 관악산 환경정화 봉사활동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열려라 중국)

중국 정부 외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표



김옥림 중국변호사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이하 'FDI') 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7월까지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2009년 8월부터 FDI 규모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자이용에 대한 산업별, 지역별 구조조정과 더불어 외자 유치 규모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올해 4월부터 국무원 및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은 외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4월 6일, 국무원은 '외자이용 업무 개선에 관한 의견(關於進一步作好利用外資工作的若干意見)'(이하 '외자이용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외자이용의견은 총 20개 조항으로 '외자이용구조의 최적화', '중서부 지역으로의 외자 유치 유도' 등 주제로 5개 부분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외자이용구조의 최적화를 위하여 산업 조정 측면에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수정할 것이며, 이러한 수정에 따라 지역적 조정에 입각하여 '중서부지역외상투자우세산업목록'도 수정하여 중서부에서 노동밀집형 프로젝트에 외자를 집중유치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자본에 대하여 산업별로 투자 장려, 허가, 제한, 금지 프로젝트를 명시하고 경우에 따라서 특정 품목에 대한 외자지분비

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중서부지역외상투자우세산업목록'은 외자 유치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외자 유치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성(省)별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우세산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중서부지역외상투자우세산업목록'에 명시된 프로젝트는 일괄하여 장려류에 해당하는 우대정책을 적용받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중서부지역외상투자우세산업 목록'의 경우 산시성, 동북 3성, 쓰촨성, 장시성 등 21개 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장려류, 허가류 프로젝트의 인허가 심급을 기존의 1억 달러 이상에서 3억 달러로 상향조정하여 성급의 인허가권한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인허가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절차의 간소화, 인허가 범위의 최대한 축소, 심사 투명도 제고, 심사기간의 단축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인허가 리스크를 최대한 해소하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셋째,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 출자기간에 있어서 약정기간 내 출자가 어려운 경우 출자기간을 연장을 인허가한다는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출자기간의 연장 인허가는 비록 외자이용의견에서 새로이 추가한 것은 아니지만, 명시 언급함으로써 이러한 인허가 취득이 예전보다 용이해졌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넷째, 외상투자기업의 토지사용과 관련하여 부지사용수요가 큰 장려류 프로젝트에 대하여서는 토지를 우선 공급하며 공시출양지가를 '전국공업용지출양최저가기준'의 70%를 하회하지 않는 선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토지출양가 하한선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는 경작지보호를 근간으로 속속 제정되고 있는 토지의 저가출양 방지 단속 정책들과 비교할 때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외상투자기업의 경내에서 주식공개발행,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외자가 국내기업의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며, A주 상장회사가 외자를 포함한 전략적 투자자 유치와 외상투자기업의 중소담보회사 설립을 추진하며 벤처 캐피탈회사 설립을 장려한다는 등 외자의 자본시장 참여 관련한 내용도 4개 조항의 분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자이용의견은 국무원의 정책 추이를 법규화한 것으로 향후 외자 유치 관련 원칙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외자 유치 실무에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관할 부서별 세부적인 규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국무원의 이러한 원칙 제시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발 빠르게 실무 적용을 위한 세부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무원의 4월 6일 발표에 이어, 5월 4일에 국무원의 외자이용의견을 근거로 외국인 투자 장려류와 허가류 산업에 대한 투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인허가권한을 기존 1억 달러에서 3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성급 발전개혁 위원회에서 인허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억 달러 이내로 제한되는 지방정부의 인허가 권한은 그들의 외자 유치 의욕과는 달리 원천적인 '능력상의 한계'로 외자 유치에 있어서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물가인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성급의 인허가 권한을 1억 달러에서 3억 달러로 상향한 점은 외자 유치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이어 국가공상행정총국도 5월 7일에 국무원의 외자이용의견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 출자와 관련하여 채권증자 방식의 도입을 지원한다고 규정하면서 특히 '외국인 주주가 외상 투자기업에 대한 채권을 등록자본금을 전환'하는 방식을 우선 지원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외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 지연 출자와 관련하여 출자기간 변경 등기 절차의 진행, 회사명칭 중에 '중국'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의 완화, 동부지역의 외상 투자기업이 중서부로 이전 시 전출·전입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첫 담당자가 일관하게 밀착 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제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자 유치 관련 또 하나의 핵심부서인 상무부에서는 아직 외자이용의견과 관련하여 세부 규정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수정을 위하여서는 상무부의 역할이 불가피한바 외자 유치 관련 세부적인 규정의 제정이 점쳐지고 있고,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 환경의 제도적인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JS-Horizon

(Vietnam LIVE!)

골프코스 건설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 검토



김주현 변호사 · JS Horizon Vietnam Hanoi 지사장

베트남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골프를 즐기는 베트남 사람들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골프 인구의 증가와 함께 골프코스 건설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골프코스 건설사업을 위해 농지가 대규모로 골프코스 전용이 되고, 또 여러가지 환경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타나면서 무분별한 골프코스 건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작년 말부터 베트남 정부에서는 골프 코스 건설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책을 시행하면서,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골프코스 건설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골프코스 건설사업이 취소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골프코스 건설사업도 새로운 규제에 맞추어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 규제책에 따르면 2020년까지 베트남 전국에 89개의 골프코스 프로젝트(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19개의 골프코스 포함)를 허용하며, 이러한 골프코스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사용되는 전체 부지 면적에 대한 규제로서, 18홀 골프코스를 위한 전체 면적이 100H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농사를 위한 논을 골프장으로 전용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골프장 건설 사업을 위해서 일모작 경작지를 사용하는 것은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일모작 경작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일모작 경작지를 5H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전체 골프장 사업 부지 면적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 건설 사업은 공단예정지역 및 신도시예정지역, 특별 산림 보호 지역 등으로 예정된 지역에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 사업의 실행과 관련해서도 사업허가에 따른 일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데, 골프장 사업의 시행은 허가를 받은 후 4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골프장 건설 사업은 예정된 시행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골프장 건설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골프장 건설과 함께 추진되었던 빌라사업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골프장 지원 시설은 이미 골프코스 건설을 위해 지정된 부지에만 지을 수 있으며, 골프코스를 위해 지정된 부지에 판매를 위한 주택 또는 빌라를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용 주택의 건설을 일부 허용하면서도 임대용 저층 주택의 건설을 위한 부지의 비율은 골프장 건설을 위한 전체 부지 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법에서 정한 환경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환경에 어떠한 위해를 가해서도 안되며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제책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난개발이 우려될 만큼 우후죽순처럼 추진되었던 골프장 건설사업이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제책에 따라 골프장 인허가의 조건이 까다로워진 만큼 골프장 인허가에 대한 메리트가 그만큼 높아진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그리고 베트남 정부가 위와 같은 규제책을 시행하면서도, 향후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골프 인구의 증가를 감안하여 각 지역에 Public Golf Course의 건설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함께 마련한 것도 향후 골프코스 건설사업에 대한 향방을 가늠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JS-Horizon](#)

(생생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사 관련 법제



채희석 변호사

최근 해외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에 힘입어 중앙아시아의 주요 국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8년 10월 IMF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하여 최근 한국과의 교역은 다소 주춤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호에서는 우크라이나 투자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 관련 법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회사의 설립, 운영 및 해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법(the Civil Code)과 상법(the Commercial Code)이 적용됩니다. 민법과 상법은 모두 2003년 1월 16일 공포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민법 및 상법과 별도로 우크라이나는 회사법(the Law "On Companies", 1991년 9월 19일 공포)과 주식회사법(the Law "On Joint Stock Companies", 2008년 9월 17일 공포)을 두고 있고, 회사의 등기에 관해서는 회사등기법(the Law "On the State Registration of Legal Entities and Individual Entrepreneurs", 2004년 7월 1일 공포)이 적용됩니다.

특히 2008년 9월 17일에 공포되어 2009년 4월 30일부터 시작된 주식회사법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예기간 동안 모든 주식회사는 정관과 내부규정을 주식회사법에 일치하도록 수정하여야 하고, 실물로 발행한 주권은

모두 전자주권 형태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또한 2009년 4월 30일 이후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 주식의 액면가 혹은 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의하는 경우 주식회사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정관 및 내부규정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민법은 법인이 영리활동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회사 형태로 설립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회사가 인정됩니다.

1. 완전책임회사(company with full liability)
2. 결합책임회사(company with combined liability)
3. 추가책임회사(company with additional liability)
4.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5.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형태는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이고, 양자 모두 투자자의 유한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다음 호에서는 우크라이나 관계법령상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주요 제도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JS-Horizon

(주목! 이 판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사용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1. 들어가며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1997년 근로기준법(현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에 도입된 이래 연봉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연봉제로 대표되는 성과급제 임금 시스템의 경우, 연공급제와 달리 임금이 계속 상승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어질 수도 있으므로 매년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는 면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상 성과급제 임금체계가 아니면서 연봉제의 형태를 취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사업장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원래 퇴직금제도는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런 식으로 중간정산제도가 사용된다면 퇴직금을 통한 퇴직 후 근로 생활보장의 취지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중간정산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연봉제나 포괄산정임금제를 이용하여 퇴직금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은 적법한 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일관된 판례를 형성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중간정산의 방식으로 이미 지급된 그 돈에 대하여 사업자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판시한 판례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지급된 그 돈이 임금에 산입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부당이득으로 사업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른 대법원 판결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얼마 전 대법원이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의 대상이고, 사용자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퇴직금지급채무에 대해 상계항변할 수 있다는 **전원 합의체 판결**을 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 대상판결의 주요 쟁점

논의가 된 주요한 쟁점은 (i)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효력이 있는지, (ii) 효력이 없다면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이 부당이득의 대상인지, (iii) 그렇다면 사용자는 자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다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할 수 있는지, (iv) 할 수 있다면 상계가능한 범위는 얼마인지입니다.

대상판결의 입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위 논점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간단히 사실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3. 사실관계 및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사실관계의 요지

이 사건의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들(근로자들)은 피고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2) 피고 회사는 2002년 1월 1일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하였다.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 각 근로자별로 연봉총액을 본봉, 수당, 퇴직금, 상여금 등으로 그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3)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체결한 연봉계약서에는, (i) "2. 근로조건외 표시" 중 "가. 연봉액의 내역"으로 기본급에 해당하는 본봉,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및 상여금과 함께 1년에 1개월 평균임금 상당액인 퇴직금의 1년간 지급총액과 이를 각 12등분하여 매월 분할 지급되는 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하였고, (ii) "나. 연봉액 지급방법"의 항목으로, "해당 연봉액은...(중략)... 통상적인 개념의 월급여, 상여금, 시간외 수당, 제수당과 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을 포함한 총액임을 확인합니다. ...(중략)... ⑧ 근로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금을

매월 단위로 중간 정산하여, 정규 급여지급일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위 조항 옆에는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가 직접 기명과 서명을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그 후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이라는 명시적인 항목으로 퇴직금 명목의 돈을 매월 균분하여 지급받았다.

나.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연봉액 중 퇴직금 명목으로 기재되어 매월 지급된 금원은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그 금원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다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i) 원고들과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을 연봉총액으로 정한 후 이를 매월 나누어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ii) 설령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금의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더라도, 위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을 상계할 수 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4. 대상판결 등의 요지

가. 하급심 판결들의 요지

1심 법원은 피고 회사가 매월 정기적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돈은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퇴직금에 될 수 없고 "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8. 25. 선고 2005가합8989 판결).

그러나 2심 법원은 (i) 회사가 매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이므로 회사는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여기까지는 1심과 동일한 입장입니다), (ii)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새로 지급해야 하는 평균임금의 계산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에 포함될 수 없으며, (iii) 퇴직금은 임금에 포함될 수도 없고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없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원고들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의 상계항변에 따라 퇴직금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소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나86698 판결).

나. 대상 판결의 요지

3심인 대상판결은 문제가 된 쟁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째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소극).

둘째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이 부당이득의 대상인지에 대하여**, (i) 퇴직금분할약정이 무효인 이상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원래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원이 아니었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ii) 그렇다면 사용자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적극).

셋째 **상계의 허부에 관하여**, (i) 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현재 2010. 6. 4. 제10339호로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제43조 제1항 본문입니다)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퇴직금채권 또한 수동채권으로 상계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ii)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 금원의 반환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금액의 정산, 조정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한정적 적극).

넷째 상계의 범위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청구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퇴직금청구권의 1/2).

5. 대상판결의 의의

위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습니다.

가.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돈은 중간정산의 효력이 없음을 확실히 함

그동안 대법원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한, 중간정산 명목으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그 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원 또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여 왔습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2000다27671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5도467 판결 등 다수). 대상판결은 다시 한번 위 입장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닙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

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나. 무효인 중간정산으로 지급된 돈은 부당이득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금원이 법률상 원인없이 제공된 이익인지 아니면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한 판례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판결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미리 지급한 금원은 위 약정이 무효인 이상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금원이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이에 대하여 3인의 대법관은 위 금원 또한 임금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함

원래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재지급해야 할 퇴직금채권 또한 임금채권의 일종이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 또한 금지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대법판결은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하다고 기존 판례의 논리(대법원 1995. 12. 31. 선고 94다26721 선고)를 준용하였습니다.

기존 판례의 요지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

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판결은 기존 판결의 의의를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된다"에서 찾고, 위 논리를 근거로 마찬가지로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된다면, 사용자에게 상계항변을 허용하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당연하고 이로써 근로자가 특별히 불리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6. 대상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의할 점

가. 임금으로 해석되어 반환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음

비록 대상판결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부당이득이라고 보았으나,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 모두가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일괄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상사건에서는 피고 회사는 월급명세서에 "퇴직금" 명목의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서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연봉계약서에도 퇴직금을 별도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기재하였습니다. 곧 월급이 아닌 퇴직금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하였고, 주관적으로도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이 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라는 문구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적거나, 퇴직금이라는 계정이 별도로 구별되어 있지 않아 도대체 정확히

얼마의 금액이 퇴직금 명목이었는지 알 수 없고 그래서 근로자 또한 이를 퇴직금이 아닌 월급의 일부라 파악한 경우에는 임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른 하급심 사건에서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금원은 임금의 일부로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고 대상판결과 반대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도 바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보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09. 5. 8. 선고 2008나22150 판결).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더라도 퇴직금이 매월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그 중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구분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 것입니다. 오히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을 포함하여 그 임금 전체를 기준으로 그때그때의 생활자금 등에 대한 지출계획을 세우고 지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하기 위하여는, 월급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별도로 마련되어 퇴직금 명목으로 얼마가 지급되는지 객관적으로 명확히 구별되어 왔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후불적 임금의 성격 외에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갖는 퇴직금 제도의 의의가 퇴색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상판결을 내린 일부 대법관들 또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나. 1/2을 초과하는 부분만 상계가 가능함

원심인 2심 판결은 상계 가능한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퇴직금청구권 전부를 상계할 수 있다는 듯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점 때

문에 학계로부터 퇴직금채권은 임금채권의 일종이므로 1/2을 초과하는 부분만 압류와 상계가 가능한데 이를 간과하였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이 점은 대상판결에 와서야 시정이 되었는데, 퇴직금채권 또한 임금채권의 일종이므로 1/2을 초과하는 부분만 압류가 가능하고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만 상계가 가능하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상계가 금지된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통하여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대상판결이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입장을 나타낸 것은 아니나 법리상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 소멸시효에 유의할 것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월급에 포함하여 금원을 지급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JS-Horizon

7. 다운로드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최신법령)

1. 새로운 상행위 유형의 도입 등

: 「상법」 일부 개정(법률 제1028호, 2010. 11. 15. 시행)

1. 새로운 상행위 유형으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등을 추가하였고(법 제46조), 공중접객업의 정의를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로 개정하였습니다.
2.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상인이 아닌 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경우에도 상법상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법 제55조), 이 경우 상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상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불합리를 제거하였습니다.
3. 종전에는 지점(支店)에서의 거래의 경우 채무이행장소를 그 지점으로 하고 있어, 채무자의 지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채무자의 지점이 채무이행의 장소가 되어 채권자의 현 영업소를 채무이행의 장소로 하는 민법 제467조 제2항과 모순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상법은 채권자의 지점 거래의 경우에만 그 지점이 채무이행의 장소가 되도록 규정하여, 채무자의 지점거래의 경우에는 민법 제46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채권자의 현영업소가 채무이행의 장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상법 제56조).
4. 종래 운송계약의 내용과 화물상환증의 기재내용이 다르거나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 해석상 화물상환증의 효력이 문제되었으나, 개정상법은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 화물상환증이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하고, 추정이 뒤집힌 경우에도 운송인이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으로써(법 제131조) 향후 화물상환증의 효력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다운로드 : [「상법」 일부 개정\(법률 제1028호, 2010. 11. 15. 시행\)](#)

2. 기업집단의 범위로부터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제외 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2160호, 2010. 5. 14. 시행)

1. 종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출자한 재단이 설립한 대학이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및 그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는 당해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분류되어, 당해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경우 위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는 세제혜택, 정책자금지원 등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위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등을 회사설립일로부터 10년 동안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는바(법 제3조의2 제2항 제3호), 향후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상품·용역거래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의 범위를, 종래 지배주주측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회사에서 100분의 30 이상인 회사로 완화하여 공시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법 제17조의8 제3항).
3.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를 부당한 고객유인 및 사원판매행위 등에도 확대하였습니다(법 제64조의6 제1항 제3호, 제4호).
4. 다운로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2160호, 2010. 5. 14. 시행\)](#)

3. 근로자의 체당금청구에 있어서의 지원절차의 마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 개정(법률 제10320호, 2012. 1. 1. 시행)

1. 파산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체당금제도가 시행 중

이나 그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여 실제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법은 사업장 규모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신청서의 작성, 사실확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7조 제4항).

2. 다운로드 : [「임금채권보장법」일부 개정\(법률 제10320호, 2012. 1. 1. 시행\)](#)

4.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 등

: 「의료법」일부 개정(법률 제10325호, 2010. 11. 28. 시행)

1. 파산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체당금제도가 시행 중이나 그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여 실제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법은 사업장 규모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신청서의 작성, 사실확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7조 제4항).

2. 다운로드 : [「의료법」일부 개정\(법률 제10325호, 2010. 11. 28. 시행\)](#) 및 [「약사법」일부 개정\(법률 제10324호, 2010. 11. 28. 시행\)](#)

JS-Horizon

(지평지성 소식)

법무법인 지평지성 사무소 전화/팩스 국번 변경 안내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고객의 편의를 돕고 내부 전화번호 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6월 1일부터 주사무소 및 강북 분사무소 전화/팩스의 국번을 아래와 같이 **6200국**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 분	위 치	기존국번	변경국번
주 사 무 소	상공회의소 빌딩	6050국	6200국
강북 분사무소	HSBC 빌딩	6230국	

- 기존 전화/팩스 번호는 새 번호와 병행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기존 전화/팩스 번호는 국번이 6200으로 바뀌고 뒷자리 번호는 일부 변경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지평지성 안내(02-6200-1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S-Horizon

(업무동향)

포스코특수강을 대리하여 베트남 압연공장 신설 프로젝트의 투자허가 및 법률자문 업무 수행

5월 19일 포스코는 100% 자회사인 포스코특수강이 총 6억2000만달러를 투자, 베트남 봉따우성 푸미 2공단에 건설용 철강재 제품을 생산하는 연간 100만t 규모의 전기로 및 압연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평지성은 포스코특수강을 대리하여 압연공장 신설 프로젝트의 투자허가 및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연합뉴스 - 포스코특수강, 베트남 압연공장 투자 자격 취득 (2010. 5. 19.)
- 서울경제 - 포스코특수강, 베트남에 압연공장 짓는다 (2010. 5. 19.)
- 머니투데이 - 포스코특수강, 베트남에 압연공장 건설 (2010. 5. 20.)

[담당변호사]



한승혁 호주변호사 호치민시티 사무소

JS-Horizon

(업무동향)

지평지성, 지평지성, IBKS SPAC 설립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IBK투자증권의 SPAC 설립과 관련한 자문을 맡아 지난 4월 말 IBKS SPAC(IBKS Smart SME 기업인수목적회사, 이하 'IBKS SPAC')의 설립을 완료하였으며, 이후의 제반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IBKS SPAC의 설립에는 IBK투자증권을 비롯하여 IBK기업은행, IBK캐피탈, 큐캐피탈파트너스, 신한캐피탈, 외환캐피탈, 선명인베스트먼트, CKD창업투자가 공동발기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IBKS SPAC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인수합병을 추진하여 주식시장에 상장시키고, IBKS SPAC 경영진의 노하우를 활용해 합병법인의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업운영 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관련기사]

- 매일경제 - IBK투자證, 스펙 7월께 공모 (2010. 4. 29.)
- 한국경제 - IBK투자증권 스펙 설립 (2010. 4. 29.)
- 파이낸셜뉴스 - IBK투자證, SME 전문 스펙 설립 (2010. 4. 29.)

[담당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강울리 변호사 채희석 변호사 이은영 변호사 류용현 회계사

JS-Horizon

(업무동향)

'제2회 지평지성 법무아카데미' 진행 중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5월 26일 '제2회 지평지성 법무아카데미'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지평지성 법무아카데미는 7월 1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사내변호사를 포함한 기업의 법무실무자들을 모시고 여러 법률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배우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예상을 넘는 호응으로 인하여 참석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모시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무아카데미 프로그램]

구분	강의주제	강사
1 회	회사의 기관 - 이사회와 주주총회	강경국 변호사
2 회	회사의 자금조달 - 주식, CB, BW, 주식양수도	신 민 변호사
3 회	M&A 개관	김상준 변호사
4 회	파이낸싱 (ABS, ABCP, PF 등)	강율리 변호사
5 회	자본시장법	이행규 변호사
6 회	공정거래법	박형삼 변호사
7 회	기업조세 및 회계	구상수 회계사
8 회	도산법 개관	홍성준 변호사

JS-Horizon

(지평지성 단신)

이호원 대표변호사, 대법원 주최 '사법제도개선 공청회' 사회자로 참석



(좌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호원 대표변호사)

2010. 5. 26. 지평지성의 이호원 대표변호사가 대법원의 주최로 개최된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제도도입과 법조일원화 방안에 관한 '사법제도개선 공청회'에 사회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기 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개최되었으며 김현석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이 첫 발제자로 대법원이 마련한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시행 방안"에 관하여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김남기 조선일보 논설위원,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준동 부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정선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자들은 대법원이 마련한 '상고심사부 제도도입'에 대하여 대법원이 정책판단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합리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대체로 동의하였지만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하였습니다.

임지봉 교수와 김남기 논설위원은 새로운 제도는 국민을 위한 제도, 국민의 인식과 기대에 부합하는 제도로써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정선주 교수는 이 제도의 효율성을 위하여 상고허가제와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MBC뉴스 - 대법원, 사법제도 최종 개혁안 곧 확정 (2010. 5. 27.)
- 뉴시스 - 사법제도 115년만에 대변혁 예고 (2010. 5. 26.)

JS-Horizon

(지평지성 단신)

임성택 변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최 '무선인터넷 활성화와 심의 전망' 세미나 발제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

2010. 5. 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 세미나'가 한국방송회관 3층 회의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무선인터넷 활성화와 심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지평지성 소송파트의 임성택 변호사가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업자 자율 심의 현황'이라는 내용으로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머니투데이 - "모바일콘텐츠 규제·심의 실효성 높여야" (2010. 5. 13.)

[관련사진]



JS-Horizon

(지평지성 단신)

임성택 변호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주최 '변호사와 공익인권' 강연

2010. 5. 26. 지평지성의 임성택 변호사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가 주최한 '변호사와 공익인권'이라는 주제의 강연회에서 로스쿨 재학생과 연세대 장애인권동아리 '게르니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법률신문 - 임성택 변호사, 연세대로스쿨에서 공익인권 강연 \(2010. 6. 1.\)](#)

JS-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관악산 환경정화 봉사활동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관악산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가족을 동반한 이번 봉사활동은 서울대 입구에서 연결되는 관악산에서 출발하여 연주대와 삼성산으로 흩어져 활동하였고 각종 묵은 쓰레기와 담배꽂초들을 수거할 수 있었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지평지성의 작은 손길들이 신록이 우거진 관악산을 더욱 푸르게 가꾸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관련문의]

- [관악구 자원봉사센터 \(http://www.gvc.go.kr\)](http://www.gvc.go.kr)

[관련사진]



법무법인 지평지성, 관악산 환경정화 봉사활동 (2010. 6. 5.)

JS-Horizon



지평지성
JISUNG HORIZON

<http://www.js-horizon.com>

법무법인 지평지성

주사무소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Tel : 02)6200-1600 Fax : 02)6200-0800

강북 분사무소

(100-161)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25 HSBC빌딩 15층 Tel : 02)6200-1800 Fax : 02)6200-0830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Tel : 02)6200-0880 Fax : 02)6200-0804

상해 사무소

Room 2310, Shanghai Maxdo Center, No. 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 86-21-5208-2800 Fax: 86-21-5208-2807

호치민 사무소

#2205 Saigon Trade Center, 37 Ton Duc Thang St., Dis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8-3910-7510 Fax: 84-8-3910-7511

하노이 사무소

Suite 1003, 10th Fl., Dae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 Ba Dinh Dist., Hanoi, Vietnam Tel: 84-4-6266-1901 Fax: 84-4-6266-1903

캄보디아 사무소

SK-Shinah Office, 2F No.797, Monivong Blvd. & St. 484, Phsar Doeum Thkov, Khan Chamkarmon, Phnom Penh, Cambodia Tel : 855-23-726-897 Fax : 855-23-726-457

라오스 사무소

LLC Bldg, Nongbone Road, Saysetha District, Vientiane, Laos Tel : 856-20-301-9820 Fax : 856-21-264-344